

계약학과 운영규정

(제정 2013. 9. 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전주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에 따라 설치한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1., 2024.2.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2. “재교육형 계약학과”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제3조(계약학과의 명칭·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 ①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모집인원은 해당 연도 사업비 규모에 따라 학생정원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3.1., 2015.9.1., 2017.2.25., 2021.12.14., 2022.02.28., 2024.2.28.>

②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총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생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2.28.>

③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총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전주대학교 학칙」 제4조 및 「대학원 학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 ① 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② 입학전형은 신입생 전형과 편입생 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학생선발은 관련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또는 편입학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④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선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1. 학사학위과정은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2.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대학연계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참여자 또는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자
3.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원
4. 중소기업 5년 이상 근속자
5.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6.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자
7. 청년장병진로도움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전역 의무복무병 및 단기복무 간부
8.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근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
9.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제3항에 근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 2항에 근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기업에 재직 중인 자
11.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으뜸기업”에 재직 중인 자
1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학기 및 수업일수는 「전주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하계 또는 동계 방학 중 계절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되, 계약에 따라 수업장소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제6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학칙에 정한 교과과정에 따르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조(설치·운영기간 및 재학생 보호) ①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은 계약에 따르되, 학위수여기간 이상으로 한다.

② 계약학과가 그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재학생 보호 방안은 계약서에 따르되, 당해 계약학과 재학생 본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계약 당사자는 협력한다.

제8조(운영경비 부담 및 수업료 등 납부)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 체결 시 상호협의를 의하여 정한다.

② 계약학과는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이 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계약학과 운영) ① 계약학과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 또는 유사한 학과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학사관리는 관련 대학장 혹은 대학원장이 관장한다.

② 계약학과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학위과정은 관련 대학운영위원회에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은 관련 대학원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체 등과의 계약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운영경비의 부담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 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계약학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 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의 계약학과 운영지침에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준용한다.

제10조(학사제도 적용 예외) 계약학과의 학생은 「전주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에서 정한 휴학, 전과(부), 재입학, 다전공, 학점교류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9.1.>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대학교 학칙」, 「대학원 학칙」 및 제규정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4.2.28.>

제12조(회계관리) 계약학과의 회계 관리는 교비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계약학과 운영규정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2년 3월 13일에 제정한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승계한 것으로 보며 이 규정 제정에 따라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14.>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3-4 계약학과 운영규정

부 칙 <2023.12.15.>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2.28.>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2.25., 2021.12.14., 2022.2.28., 2023.9.1., 2023.12.15.>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

구분	대학(원)	계열	과정	학과명	세부전공	정원(명)	학 위 명	비 고
학 부	공과대학	공학계열	학사	탄소융합공학 학과	-	20명	공학사	재교육형
대 학 원	일반대학원	자연 과학계열	석사	푸드테크학 과	푸드테크 개발, 푸드테크 운영	20명	이학석사	재교육형
	일반대학원	공학계열	석사	탄소융합· 에너지공학 과	탄소융합공 학	15명	공학석사	채용조건형
	일반대학원	공학계열	박사	탄소융합공 학과	탄소융합공 학	15명	공학박사	재교육형
	일반대학원	공학계열	석사	Agro AI학과	Agro AI	20명	공학석사	채용조건형
	문화산업 대학원	공학계열	석사	탄소나노부 품소재공학 과	탄소나노부 품소재공학	20명	공학석사	재교육형